

현 행	개 선
(2) 전업농어가란 <u>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</u>	(2) 전업농어가란 <u>농업·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지방자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면지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</u>

다. 가감산특례 조정

① 주택에 대한 가산율 조정

<현 행>

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	가산율	가산율적용 제외부분
[단독주택]		
(6) 1구내 연면적이 165㎡이상 198㎡이하	10/100	○ 지하실 면적
(7) 1구내 연면적이 198㎡초과 231㎡이하	20/100	”
(8) 1구내 연면적이 231㎡초과 264㎡이하	30/100	”
(9) 1구내 연면적이 264㎡초과 298㎡이하	40/100	”
(10) 1구내 연면적이 298㎡초과 331㎡이하	50/100	”
(11) 1구내 연면적이 331㎡초과	70/100	”
[공동주택]		
(12) 1구의 전용면적이 100㎡이상 132㎡이하	10/100	○ 공용면적
(13) 1구의 전용면적이 132㎡초과 165㎡이하	20/100	○ 복층형공동주택의 경우 29㎡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가산율의 50%적용(예 : 가산율 40/100→20/100)
(14) 1구의 전용면적이 165㎡초과 198㎡이하	30/100	
(15) 1구의 전용면적이 198㎡초과 231㎡이하	40/100	
(16) 1구의 전용면적이 231㎡초과 245㎡이하	50/100	
(17) 1구의 전용면적이 245㎡초과	70/100	

<조 정>

현행 주택에 대한 가산율은 6단계로 단계별 변화에 따른 가산율 차이가 커서 약간의